

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4. 5. 9 선고 2024가단335 판결 [건물명도 및 양수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조합

소송대리인 B

피 고 1. 한국토지주택공사

2. C

변 론 종 결 2024. 4. 11.

판 결 선 고 2024. 5. 9.

주 문

1. 피고 C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.
2.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원고에게 6,269,469원 및 그중 6,095,359원에 대하여 2024. 1. 29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1.93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이 부담하고, 원고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.
4. 제1,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2 '청구원인' 기재와 같다.
2. 자백간주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)

판사 권순향

별지